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장병완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35
----------	------

발의연월일 : 2016. 11. 14.
발의자 : 장병완 · 윤영일 · 김경진
 이개호 · 손금주 · 김철민
 주승용 · 유동수 · 이채익
 김동철 · 김수민 · 박주선
 이동섭 · 송기석 · 최경환
 권은희 · 인재근 · 천정배
 조배숙 · 홍익표 · 김규환
 김성원 의원(22인)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광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안이유

광산업은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음.

이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업(光產業)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기술”이란 빛의 에너지, 파동성, 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광산업”이란 광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광산업진흥단지”란 광기업(광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광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기술을 기반으로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광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기술 및 광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광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광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광산업의 진흥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광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기술 및 광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광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 광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 그 밖에 광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광기술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 및 광기술 관련 제품(이하 “광기술등”이라 한다)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광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 광기술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그 밖에 광기술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광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 및 광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 및 광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광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광산업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광산업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14조(광산업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광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광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광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라 광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별 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서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별칙

제22조(별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